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긴급 재난 발생 시 관련 정보의 제공 의무 신설 〉
■ 한준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356호)

2025. 11.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임 종 수

목 차

□ 한준호의원 대표발의(2212356)	1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긴급 재난 발생 시 관련 정보의 제공 의무 신설(안 제32조의2 신설)	3

□ 한준호의원 대표발의(2212356)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한준호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8. 25.
3. 회 부 일 : 2025. 8.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철도는 국민 대다수가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철도시설관리자는 관련 법령을 근거로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철도 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에게 철도 이용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철도사고 등 긴급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고 장소 및 지연 구간, 복구 예정 시간 등에 대한 실시간 정보 제공이 미흡하여 이용자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일례로 시간표 상의 예정시각에 맞추어 열차가 오지 않아 이용자가 직접 뉴스 기사를 검색하여 뒤늦게 사고 소식을 인지한다거나, 안내방송이 송출되긴 하지만 제대로 들리지 않아 사고 관련 정보가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는 등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용자의 알 권리와 철도서비스 이용의 편의성을 실질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철도사고 등 긴급 재난 발생 시 사고 내용 및 운행 지연 상황 등 긴급 재난 관련 정보를 시각적인 안내 표시, 음성 안내 시스템 등을 통하여 제공하여 비상 상황 시 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32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긴급 재난 발생 시 관련 정보의 제공 의무 신설(안 제3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32조의2(긴급 재난 관련 정보 제공)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사고 등 긴급 재난이 발생할 경우 철도서비스 이용자가 상황을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사고 내용 및 운행 지연 상황 등 긴급 재난 관련 정보를 시각적인 안내표시, 음성 안내시스템 등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 재난 관련 정보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검토의견

긴급한 재난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련 정보를 인근 주민, 서비스 이용자 등에게 제공하는 것은 단순히 재난 발생 사실의 전파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 추가 피해 예방 및 사회적 혼란 방지 등을 위하여 필수적임.

「철도사업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¹⁾에서는 철도사고 또는 운행지연 시 열차 내 탑승중인 여객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은 규정되어 있으나, 인근 역시설 등에서 철도를 이용하려는 이용자에 대한 정보 제공에 관해서는 규정상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개정안은 철도분야에서 철도사고 등 긴급 재난이 발생할 경우 철도서비스 이용자가 사고 내용 및 운행 지연상황 등의 상황을 신속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철도시설관리자가 시각적인 안내표시, 음성 안내시스템 등을 통하여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긴급 상황 발생시 철도서비스 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하려는 취지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철도사고 등의 긴급 재난시 관련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의

1) 「철도사업법」

제20조(철도사업자의 준수사항)

- ③ 철도사업자는 여객 운임표, 여객 요금표, 감면 사항 및 철도사업약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계 역·영업소 및 사업소 등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 이용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준수사항 외에 운송의 안전과 여객 및 화주(貨主)의 편의를 위하여 철도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 철도사업자의 준수사항(시행규칙 제15조 관련)

7. 철도사업자는 여객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철도사고 또는 장애로 장시간 열차가 정차·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철도운수종사자가 다음 각 목에 따라 성실하게 지키도록 하고, 항상 지도·감독해야 한다.

가. 원칙적으로 1시간 이상 열차가 정차·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열차 내 승객에게 지체 없이 대피 등 구호조치를 시행하도록 함. 다만, 안전상, 그 밖에 열차운행상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사고발생 지점과 인근 역 등과의 거리가 멀어 단시간 내 구호조치가 어려운 경우는 제외한다.

나. 열차 내 여객에게 지연사유와 진행상황을 여객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안내방송, 영상장치 등을 활용하여 매 20분 간격으로 안내하도록 함.

성격 및 목적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현행법 제1조(목적)²⁾에 따르면 이 법은 철도망의 신속한 확충과 철도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긴급 재난시 관련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내용은 철도이용자의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철도사업법」 또는 철도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철도안전법」에 두는 것이 법체계상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은 ‘철도시설관리자’를 정보제공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고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국가철도공단)³⁾인데,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등은 철도의 운영과정에서 주로 발생하고 인지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철도운영자인 한국철도공사가 관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철도시설관리자보다는 철도운영자⁴⁾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철도망의 신속한 확충과 철도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6. “철도시설의 건설”이라 함은 철도시설의 신설과 기존 철도시설의 직선화·전철화·복선화 및 현대화 등 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철도시설의 개량을 포함한 활동을 말한다.

7. “철도시설의 유지보수”라 함은 기존 철도시설의 현상유지 및 성능향상을 위한 점검·보수·교체·개량 등 일상적인 활동을 말한다.

9. “철도시설관리자”란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철도운영”이라 함은 철도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철도 여객 및 화물 운송

나. 철도차량의 정비 및 열차의 운행관리

다. 철도시설·철도차량 및 철도부지 등을 활용한 부대사업개발 및 서비스

10. “철도운영자”라 함은 제21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등 철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철도사업법」상 철도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열차 운행에 관한 정보 제공이 명시되어 있는 등 유사한 내용이 이미 규정되어 있고, 실제 철도사고 발생시 역 전광판, 안내방송, 어플리케이션(코레일톡) 등을 통해 열차사고 및 운행 지연 상황 등을 안내하고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나. 국토교통부 의견

개정안은 「철도사업법」의 철도사업자의 준수사항, 「철도안전법」의 철도사고 발생 시 후속조치 등의 규정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철도사업법」에 철도사업자는 운송안전과 관련해 철도운수종사자가 지연 정보 안내를 성실히 지키도록 하고, 지도·감독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철도안전법」에서는 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 열차 운행에 관한 정보(철도사고, 재난 관련)를 운전업무종사자 등에게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582

○ 『철도사업법』

제20조(철도사업자의 준수사항)

③ 철도사업자는 여객 운임표, 여객 요금표, 감면 사항 및 철도사업약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계 역·영업소 및 사업소 등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 이용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준수사항 외에 운송의 안전과 여객 및 화주(貨主)의 편의를 위하여 철도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 15조(철도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사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3과 같다.

○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 철도사업자의 준수사항(시행규칙 제15조 관련)

4. 철도사업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일반 공중이 보기 쉬운 영업소 등의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가. 사업자 및 영업소의 명칭

나. 운행시간표(운행횟수가 빈번한 운행계통의 경우에는 첫차 및 마지막차의 출발시각과 운행 간격)

다. 정차역 및 목적지별 도착시각

7. 철도사업자는 여객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철도사고 또는 장애로 장시간 열차가 정차·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철도운수종사자가 다음 각 목에 따라 성실하게 지키도록 하고, 항상 지도·감독해야 한다.

가. 원칙적으로 1시간 이상 열차가 정차·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열차 내 승객에게 지체 없이 대피 등 구호조치를 시행하도록 함. 다만, 안전상, 그 밖에 열차운행상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사고발생 지점과 인근 역 등과의 거리가 멀어 단시간 내 구호조치가 어려운 경우는 제외한다.

나. 열차 내 여객에게 지연사유와 진행상황을 여객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안내방송, 영상장치 등을 활용하여 매 20분 간격으로 안내하도록 함.

다. 열차 내 여객의 대기시간이 1시간 이상일 경우 식수 등 적절한 음식물을 제공하도록 함.

라. 열차 지연에 대한 비상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신속히 투입하도록 함.

○ 『철도안전법』

제40조의2(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

- ① 운전업무종사자는 철도차량의 운전 업무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철도차량 출발 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이행할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 운행에 관한 안전 수칙을 준수할 것
- ② 관제업무종사자는 관제업무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업무종사자 등에게 열차 운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
 2. 철도사고, 철도준사고 및 운행장애(이하 “철도사고등”이라 한다) 발생 시 국토교통부령 시행규칙 제76조의5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이행할 것
- ⑤ 철도사고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종사자와 여객승무원은 철도사고등의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철도차량 내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승객 구호조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후속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이 필요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5(관제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 ① 법 제4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관제업무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운전업무종사자, 여객승무원 또는 영 제3조제4호에 따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열차의 출발, 정차 및 노선변경 등 열차 운행의 변경에 관한 정보
 2. 열차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정보
 - 가. 철도차량이 운행하는 선로 주변의 공사·작업의 변경 정보
 - 나. 철도사고등에 관련된 정보
 - 다. 재난 관련 정보
 - 라. 테러 발생 등 그 밖의 비상상황에 관한 정보
- ② 법 제40조의2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철도사고등이 발생하는 경우 여객 대피 및 철도차량 보호 조치 여부 등 사고현장 현황을 파악할 것

2. 철도사고등의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 가. 사고현장의 열차운행 통제
 - 나. 의료기관 및 소방서 등 관계기관에 지원 요청
 - 다. 사고 수습을 위한 철도종사자의 파견 요청
 - 라. 2차 사고 예방을 위하여 철도차량이 구르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지시
 - 마. 안내방송 등 여객 대피를 위한 필요한 조치 지시**
 - 바. 전차선(電車線, 선로를 통하여 철도차량에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말한 다)의 전기공급 차단 조치
 - 사. 구원(救援)열차 또는 임시열차의 운행 지시
 - 아. 열차의 운행간격 조정**
3. 철도사고등의 발생사유, 지연시간 등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관리할 것

제76조의8(철도사고등의 발생 시 후속조치 등)

① 법 제40조의2제5항 본문에 따라 **운전업무종사자와 여객승무원은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업무종사자와 여객승무원은 후속조치에 대하여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이행할 수 있다.

1. 관제업무종사자 또는 인접한 역시설의 철도종사자에게 철도사고등의 상황을 전파할 것
2. 철도차량 내 안내방송을 실시할 것. 다만, 방송장치로 안내방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3. 여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도차량 내 여객을 대피시킬 것
4. 2차 사고 예방을 위하여 철도차량이 구르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할 것
5. 여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도차량의 비상문을 개방할 것
6. 사상자 발생 시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되도록 지원할 것